

“변경(alteration)과 이전(removal)”

이 순 관

(보험 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7년 10월 8일 보험계약자 A와 보험자 B사이 에 이리수출 자유지역에 소재하는 A소유의 공장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7년 10월 8일부터 1990년 10월 8일까지로 하는 영문 화재보험 계약 [F.O.C(F)의 uniform policy condition이 첨부되었음]이 체결되었다.(1987. 11. 28에는 동 공장과 부속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 하였음)

그런데 피혁 장갑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A회사는 적자의 누적으로 1989년 10월 1일 폐업 신고를 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 및 관리직 근로자들이 출근을 아니하자 생산직 근로자 90여 명이 그 무렵부터 폐업 철회를 요구 하면서 공장내에서 농성을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공장내의 회사 자산을 반출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공장을 점거하고, 약 30여 명의 근로자들은 야간에도 공장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공장내 작업장에서 숙식을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월29일 20시경 작업장에서 농성 근로자인 C가 장갑을 마지

막으로 다듬는 소위 빵틀이라고 불리우는 전열기의 쇠로 된 뚜껑을 벗겨 그속의 니크롬선이 드러나도록 한 다음 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 놓은채 작업장을 떠난 사이에 전열기의 과열로 주위에 있던 휴지,스폰지 등에 불이 옮겨 붙어 보험의 목적물인 작업장 건물 등이 소손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서로의 이견

보험계약자 A는 보험자에게 근로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 사실을 구두로 통지 하였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 B는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위험 증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 증권상의 배서 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 영문 약관 제 8조(9)항 및 제 20조에 따라 동 보험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동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1992. 7. 10 선고, 92다 13301)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 A의 청구를 기각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

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약관 제 8조 (a)항의 취지는 보험자로서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의 지배 영역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제 20조의 취지는 약관상의 모든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 근로자들이 폐업 신고에 항의하면서 공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위 약관 제 8조 (a)항에서 말하는 보험 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 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 하였으

로 위 각 보험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중략 ... ,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공장에 대한 점거 농성이 계속되던 시기를 위 약관에서 말하는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한 시기로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4. 맺는 글

본건 영문 화재보험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uniform policy condition은 원래 영국의 Fire Ofice Committee(foreign)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동 약관은 영국 보험 회사의 국외 영업이나 또는 영국 본토 이외의 해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당(계약당) 보험금액이 3백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보험금액이 거액인 고액 계약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전부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재보험자와의 출재 관계로 동 영문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나,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업체 또는 합작 투자업체, 그리고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 소유의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도 영문 약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동 약관은 법률적 토양이나 체계가 우리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영국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법리나 보험 용어의 개념 등에 있어서 우리 나라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동 약관 중 해상보험 약관과 같이 준거법 약관(governing clause)이 적용되겠으나 준거법 약관이 없을 때에는 동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나라 보험 계약법이 적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봉되는 것은 낭연할 것이다.

우리 나라 보험 계약법 제 652 조에서는 보험 기간 중에 보험자 등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이른바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문 화재보험 약관 제 6 조(계약후 알릴 의무) 및 제 7 조(계약의 해지)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두고 있다.

동 영문 약관 제 8 조(alteration and removal)에서도 위 보험계약법 및 약관상의 통지 의무에 상응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다음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당 회사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 증권상에 배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 영향을 입은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a) 종사하는 상업 또는 제조업이 변경되거나, 부보 건물 또는 보험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점유의 성질이나 그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화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위험을

증가시킬 정도로 변경되었을 때.

(b) 부보 건물이나 보험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을 비워 둔 채 30일 이상이 경과된 경우

(c) 보험 목적물이 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외의 건물 또는 장소로 이전되었을 경우

(d)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유언 또는 법률 집행에 의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로부터 이전된 경우”

위(a)항 전단에서는 직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단에서는 점유의 성질이나 기타 상황이 위험을 증가(increase the risk)시킬 정도로 변경되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문 약관과 영문 약관상에 형식적인 차이는 있으나 동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보험 계약법상의 위험 변경 증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b)항의 30일 이상 비워두었다는 의미는 다소 애매한 점은 있지만 미국 뉴욕 standard fire policy의 조항(35항)과 같이 연속(consecutive)해서 30일 이상을 비워두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15일간 무인 상태로 있다가 며칠간 사람이 거주한 후 다시 그 후 15일간 무인 상태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c)항은 보험 목적물의 수용장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을 때에는 보험 목적의 동일성(identity)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계약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